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08-073호 (사건번호 : 2020조일0001)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대리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5. 12.

주 문

1. 피심인 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자동차 판매대리 및 부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일반현황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자동차판매대리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매출액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¹⁾는 2019. 12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20.04.03~'20.11.24)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7년경 비공개된 사적 장소인 대리점 2층 사무실 내부에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1대)*한 사실이 있다.

* 촬영범위(2층 사무실) : 출입문 및 사무실 내부 직원 자리 등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그림 1 > CCTV 촬영 화면

피심인은 관할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에서 도난방지 이외에 사업장 방문고객응대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직원들의 방범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동의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에 대해 검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하여 불기소처리 하였으며,

피심인은 KISA 서면조사 과정에서 여직원들에게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답변만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기한('20.12.02~'21.01.10.)에 동의서 각 3부를 제출하였으나, 동의서 작성일^{*}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 진술 ('19.12.12. 09:4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 직원 동의서 각 3부 작성일 : '20.03.28, '20.03.30, '20.08.03

'17년경 CCTV를 설치·운영한 이후부터 직원들의 개인 영상정보가 촬영·수집된 상태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구)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영상자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가 아닌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가 적용되며,

- 이 경우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직원들의 영상정보를 수집한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 *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 되는 장소를 의미함

'비공개된 장소(대리점 2층 사무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직원들로부터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1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1.10.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검찰(남부지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했고, 직원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는 요청을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 및 결정

가.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수집한 경우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2)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내부지침('19.10.07))에 규정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과태료의 감경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나목에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17.10.17.) 요약 >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방법 목적 설치)로 발생한 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고 시정 완료(동의서 징구)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 1,000만원에서 50%인(500만원)을 감경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행정안전부 내부지침. '19.10.07.) >

분	류	구분	적 용 기 준		
적용	태도·	감경	②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	"포 노력	(50%)	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4)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한 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1,000만원에서 50% 감경(500만원)을 적용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 기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나.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은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	이 공표합니다	ֈ .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					내용 및 결과		
- 군인 	순번 명칭 위반 위반내용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500만원		
	2021년 05월 12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5.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 각각에 의한 과태료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5월 12일

위 원	^년 장	윤 종 인 (서 명)
부위	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08-074호 (사건번호 : 2020조일0013)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202-81-14695)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 1가)

대표자 지성규

의결연월일 2021. 5. 12.

주 문

- 1. 피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금 액: 4,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권고한다.
 - 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 이행할 것
 - 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가와 나의 개선권고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이 유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시중은행 법인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단위:백만원)>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자본금('20년도)
지성규	1967. 01. 30.	금융 서비스업	12,253명	396,187,562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영업수익 현황(단위:백만원) >

구 분	2018년(제52기)	2019년(제53기)	2020년(제54기)	3년 평균
매출액	25,840,394	29,957,271	35,965,434	30,587,700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1)는 2020. 3월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개인 정보 법규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20.03.20~'20.07.20)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융 상품 대규모 손실 논란 발생('19. 8)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관한 법 위반이 판단되어 통보함(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용. 위탁계약 체결의무 미이행)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DLF 상품 관련 점검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직원 36명에게 'Data 제공 동의서'를 받아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수발신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대상자 36명) 전현직 투자상품부 소속의 ELF/DLF팀 담당자, PB사업부 소속의 PB영업추진 담당자, 이벤트 마케팅 담당자 등
- ** (수집·동의 내용) 일정기간(2016.5.1.~2019.8.15.) 동안의 6개 키워드("DLF", "ELF", "금리연계", "구조화", "콜러블", "리자드" 등)가 들어간 메신저, 포털메일(내부메일), 웹메일(외부메일) 수발신 자료를 제공(불가피하게 제공되는 개인자료 포함)하고, 동 자료를 열람, 인쇄, 다른 저장매체로의 저장, 삭제 파일의 복구 등에 이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법령에 기재된 필수 기재사항(4가지) 중 일부(2가지)를 누락하여 동의받은 사실이 있으며,

※ 누락사항 : ①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②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피심인은 법무법인과 '법률고문계약서'에 기초하여 대상 직원(36명)의 메신저 및 이메일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7가지) 중 3가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 ①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②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③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참고로, 피심인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는 등 시정조치 완료하였다.('20.9월 이후)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구)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위·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보호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나,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령에 정한 필수고지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필수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을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을 문서에 포함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업무 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3.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3.19.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DLF 사태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며, 긴박한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 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고,

또한, 직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와 대상기간(약 3년)을 한정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법무법인에 위탁^{*}하였고, 이후 파기 등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요청을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 1회성 업무에 대해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였음

4. 처분 및 결정

가.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1호, 제75조제4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의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 총 800만원을 적용한다.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600	1,200	2,400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4호	200	400	800	

2)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내부지침('19.10.07))에 규정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과태료의 감경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나목에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17.10.17.) 요약 >

_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심인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 금액 800만원에서 50%인(400만원)을 감경한다.

- 가) 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의 경우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으므로 50%(300만원)를 감경한다.
- * 동의 고지는 하였으나 고지 항목 4개 중 2개(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누락하여 고지
- 나) 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의 경우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업무 위탁 시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누락하여 발생한 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고 시정 완료하였으므로 50%(100만원)를 감경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행정안전부 내부지침, '19.10.07.) >

분류	-	구분	적 용 기 준		
위반행위	위반 동기	감경 (50%)	③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이면서 그에 따른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		
내용	결과 조치	감경 (25%)	⑤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시정 또는 해소한 경우		

※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4)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각 위반행위의 과태료 총 800만원에서 50% 감경(400만원)을 적용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나. 개선권고

보호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선권고하다.

- ①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 이행할 것
- ②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 ③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①과 ②의 개선권고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5.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항,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1호 및 제4항제4호,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 각각에 의한 과태료 및 개선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5월 12일

위 원	면 장	윤	종	인	(서	명)
부위	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횽	열	(서	명)
위	원	٥]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08-075호 (사건번호 : 2020조일0018)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내과의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5. 12.

주 문

피심인 내과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 징 금 : 15,625,000원

2. 과 태 료 : 3,000,000원

3.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4.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5.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유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의료 서비스(내과)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수입 현황(단위: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수입액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¹⁾는 2020. 4월 경북구미경찰서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한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20.04.23~'20.07.01)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신고인(신원 비공개)으로부터 쓰레기장에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력서)가 포함된 문서가 발견되어 신고가 접수된 사안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문서를 전자문서로 스캔 후 박스에 밀봉하여 노상 쓰레기장에 버렸다.('20.3.25.)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유출문서, 2종)

- ①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성명, 주민등록번호) 217명, ②이력서(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자우편, 연락처, 주소 등) 2명
- ** 피심인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검진자료의 활용,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피심인의 사무장은 관할 경찰서(경북구미경찰서)를 통해 문서가 타인에게 유출 되었음을 최초 인지('20.3.30.) 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과정을 통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20.4.6.~'20.4.20.)

보호법 제73조제1호(벌칙)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아울러, 피심인은 정보주체에게 유출과 관련된 별도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 1) (구)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호법 제29조는 보호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2)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6호)'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이하 '고시'라 함) 에서는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13조제1항)
- 3) 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 필수적으로 알려야 하는 내용
 -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우
 -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4)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문서를 파기할 경우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 위반에 해당한다. (고시 제13조제1항)

2)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3.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3.19.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처분 및 결정

가.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서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별표 1의2]에 따라 15,625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호 가목 위반 정도*가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총금액 100,000천원을 적용한다.

*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 과징금 산정기준(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기본산정기준 >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 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 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 년 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2) 1차 조정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9개 지표 중 6개 준수 (12.5% 감경) 및 중요지표(접근통제/권한·암호화 기술·보안프로그램) 3개(개당 5% 감경, 총 15% 감경)를 포함하여 기준금액에서 37.5%(37,500천원)를 감경한 62,500천원으로 한다.

3) 2차 조정

1회 위반행위이고, 조사 협조,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없음 등을 감안하여 1차 조정값인 62,500천원의 50%(31,250천원)를 감경한 31,250천원으로 한다.

4) 최종 산정

현실적 부담능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영향, 추가피해 및 경제적 이익 없음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값인 31,250천원의 50%(15,625천원) 감경한 15,625천원으로 한다.

< 최종 과징금 산출내역(안) >

(단위: 천원)

기준금액 (단위:천원)	1차 조정 (가중•감경)	2차 조정 (가중·감경)	최종 산정 (감경)	최종 과징금
	62,500	31,250	15,625	
100,000 천원	6개 지표 준수, 3개 중요지표 준수 ⇒ 37.5% (37,500천원) 감경	5개 지표 준수 ⇒50% (31,250천원) 감경	부담능력(중소기업 감경률 적용) 추가피해 및 경제적 이익 없음 ⇒ 50% (15,625천원) 감경	15,625 천원

나.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제75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안전성 확보 미조치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에 대한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1)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600	1,200	2,400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2항제8호		<i>'</i>	,

2)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내부지침('19.10.07))에 규정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과태료의 감경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나목에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17.10.17.) 요약 >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인(300만원)을 감경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행정안전부 내부지침, '19.10.07.) >

분	7	구분	적 용 기 준	
적용	사업	감경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상	규모	(50%)	U '중소기합기준합」 제2호에 따른 중소기합자한 경구	

4)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 감경(300만원)을 적용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 기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5. 결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서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위반행위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 (과징금 부과 등)제1항,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제8호 각각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 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 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5월 12일

위 원	권 장	윤 종 인 (서 명)
부위	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흥열 (서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08-076호 (사건번호 : 2021조일0023)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움의원 (사업자등록번호: 144-82-006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9(삼평동 658) A동 2,3층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5. 12.

주 문

1. 피심인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움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평균)
		보건업(의원)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수입 현황(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부가세과세표준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¹⁾는 2020. 4월 침해신고로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20.04.28~'20.10.08)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인체 조직 병리검사 진단에 따른 '조직 병리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보존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5년 (진단내용) 성명, 접수번호, 등록번호, 검체채취일, 검사의뢰일, 결과보고일, 결과 출력일. 주치의. 조직병리검사 정보

피심인의 내시경 검사실 이전 과정에서 진단보고서가 보관된 박스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사업장 건물 지하 5층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사실이 있다. ('20.4.11. 21:30 이후)

제3자 신고인은 진단보고서가 버려져 있음을 확인하고('20.4.13. 22:30),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20.4.28.)

※ (유출 규모) '19년 전체 진단보고서(2,807건) 중 약 1,700건의 진단보고서 (유출 경위) 내부 사무실 이동 과정에서 담당자 관리 부주의로 생활 쓰레기와 함께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문서가 외부에 버려짐

피심인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20.5.8.) 하였으며, 1천명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았다.

※ 보유기간이 도래된 진단보고서 등은 본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으로 이동하며 문서대장 작성 및 관계자 배석하여 파기함(마지막 시행일 '20.02.19.)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 1) (구)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3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보호법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6호)'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이하 '고시'라 함) 에서는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11조제2항)
- 3) 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 필수적으로 알려야 하는 내용
 -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우
 -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4) 보호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정하고 있다.
- 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전문기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민감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처리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 위반에 해당한다.(고시 제11조제2항)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제34조제2항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3.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3.19.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처분 및 결정

가. 과태료 부과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제75조제2항제8호, 제75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의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 총 1,800만원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2)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내부지침('19.10.07))에 규정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과태료의 감경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나목에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17.10.17.) 요약 >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 금액 1,800 만원에서 50%인(900만원)을 감경한다.

- 가) 법 제23조제2항 위반행위의 경우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으므로 50%(300만원)를 감경한다.
- * 내부 사무실 이동 과정에서 담당자 관리 부주의로 생활 쓰레기와 함께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문서가 외부에 버려짐
- 나)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의 경우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행위로 조사 협조, 위반 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없음,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감안하였으므로 각각 50%(600만원)를 감경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행정안전부 내부지침. '19.10.07.) >

분류	구분	적 용 기 준
위반행위 위반 내용 동기	감경 (50%)	③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이면서 그에 따른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각위반행위의 과태료 총 1,800만원에서 50% 감경(900만원)을 적용한 9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은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	이 공표합니다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니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 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의료법인 1 메디피아 메디피움의원	법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2021.05.12	과태료 부과 300만원	
	법 제34조 제1항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2021.05.12	과태료 부과 300만원	
	법 제34조 제3항	(유출 시)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2021.05.12	과태료 부과 300만원	
	위반행위를 한 자명칭	정보보호법 위반에 (위반행위를 한 자 명칭 위반 조항 법 제23조 제2항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아 메디피움의원 법 제1항 법 제34조	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명칭 위반 조항 위반내용 법제23조 제2항 법제23조 제2항 법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법제34조 제1항 법제34조 제2항 법제34조 제2항 법제34조 제2항 합의 제34조 제2항 법제34조 (유출 시)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 지하는 기반내용 기반내용 기반내용 처분일자 명칭 위반 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기료법인 기료법인 기료법인 기료법인 기료법인 기료법인 기료법인 기료법인	

2021년 05월 12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5. 결론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항,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제8호·제9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 각각에 의한 과태료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5월 12일

위 원	면 장	윤 종 인 (서 명)
부위	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08-077호 (사건번호 : 2021조일0024)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5. 12.

주 문

피심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금 액: 3,000,000원

2.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4.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유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입주민을 대표하여 공용부·전용부 시설물 등의 유지 및 운영, 행위 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등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구성원 수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1)는 2020. 5월 접수된 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20.06.09~'20.09.02)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와의 공동주택 하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대리인 ()에게 관련 사항을 위임계약 하였고,

하자소송 진행 목적으로 공고문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세대별 하자발생 현황 설문조사('20.05.18.~'20.05.31. 총 세대)를 실시하면서 소송대리인이 작성해준 양식에 따른 설무지를 각 세대에 배포하였다.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설문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 고지사항 3가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보호법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중 하나인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내용'이 누락되었다.

※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법률사무소에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법률 사무소가 적용 법령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오인하여 설문지 양식에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고지사항을 기재토록 한 것으로 확인됨

* 망법 고지사항(3가지):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이용기간 보호법 고지사항(4가지): 망법 사항 + ^④"동의 거부권 및 거부시의 불이익"

피심인은 하자 조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지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사실조사 과정 ('20.07.07.)에서 인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 >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하자조사 및	동·호수, 성명, 연락처	하자처리에 대한 법령상
하자처리에 대한 업무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의무 이행 종료시까지

< 그림1 > 세대하자 발생 현황 설문조사 화면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구)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나.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령에 정한 필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나, 그중 하나인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거부 시의 불이익"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3.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3.19.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해준 양식에 따른 설문지를 각 세대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들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집된 정보는 당초 수집된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었고, 정보주체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다.

4. 처분 및 결정

가.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단위: 만원)

			가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600	1,200	2,400

2)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내부지침('19.10.07))에 규정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과태료의 감경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나목에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17.10.17.) 요약 >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행위*로 최소 수집 원칙 및 목적성 등이 인정되고, 추가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기준 금액 600만원에서 50%(300만원)를 감경한다.

* 동의 고지는 하였으나 고지 항목 4개 중 1개(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누락하여 고지

<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행정안전부 내부지침. '19.10.07.) >

분류	1	구분	적 용 기 준		
위반행위	위반	감경	③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이면서 그에 따른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		
내용	동기	(50%)			

※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4)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 감경(300만원)을 적용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5월 12일

위 원	면 장	윤	종	인	(서	명)
부위	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횽	열	(서	명)
위	원	٥]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08-078호 (사건번호 : 2021조일0027)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병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5. 12.

주 문

피심인 병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유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업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1)는 2019. 11월에 경찰서 이첩으로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2019.11.18.~2020.03.26.)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병원을 처음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필수 동의 항목과 협력업체 홍보를 위한 선택 동의 항목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동의받은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여 발생하였고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 거부 등과 같은 불이익은 없었다고 조사 당시에 소명함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舊)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2조제4항은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초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협력업체 홍보를 위한 동의 항목을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03.0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4.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행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	400	800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지침)에 따른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해당 사건은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발생하였고 관련 홍보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례가 없으며 동의를 거부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지침)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태도·노력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	기준금액의 50%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100만원)를 감경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5월 12일

위	원 장	윤종인 (서	명)
부유	비원장	최 영 진 (서	
위	원	강정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흥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성우 (서	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08-079호 (사건번호 : 2021조일0029)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케이티 (사업자등록번호 : 102-81-42945, 법인등록번호 : 110111-14687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표자 구현모

의결연월일 2021. 5. 12.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설립일자	엄종 및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자본금
구현모	1981.12.20.	전기 통신업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23,679명	15,644억원

2.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09.14.~'21.03.22.)를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피심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치정보 이용약관 (이하 '이용약관')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상 보유기간 경과 시, 자동 파기되도록 위치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약관		위치정보시스템		
수집 항목	보유기간	보유 항목	파기	
개인위치정보	3개월	위도·경도,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등	3개월 경과 시 매주 파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실 확인지료 (이하'제공사실 확인자료')	6개월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등	6개월 경과 시 매월 파기	

피심인은 '20.10.28. 기준 이용약관상 보유기간이 경과한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이용약관상 보유기간 경과 후 최대 1개월 간 보유했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해야 한다.

나. 판단

'20.10.28. 기준 이용약관상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약관상 보유기간 경과 후 최대 1개월 간 파기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3.2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했으며, 피심인은 '21.4.6. 의견을 제출했다.

피심인은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발생 사실이 없고 자진 시정 완료했음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5. 처분 및 결정 : 과태료의 부과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제7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개별기준의 각 목별 위반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_				\ _	<u> </u>
ſ	위 반행 위	그리 버릇ㅁ	과태료 금액		
	T 인 영 T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 • 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밉 세/5소 제2하제4ㅎ	600	1,200	2,400

2)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가중 사유가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과태료의 감경

아래와 같은 감경 사유가 있으므로 합산하여 기준금액의 40%인 240만원을 감경한다.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위반 정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10% 감경
소사 엽소·	미파기 개인정보 모두 파기, 보유기간 경과 후 매일 파기되도록 시스템 운영('20.11.)	10% 감경
자진 시정 등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것이 인정됨	10% 감경
개인정보보호 노력 정도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음	10% 감경

4) 최종 과태료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240만원을 감경한 360만원을 부과한다.

의 교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제75조 (과태료)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5월 12일

위 원	년 장	윤 종 인	(서 명)
부위	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 정 회	- (서 명)
위	원	고 성 학	- (서 명)
위	원	백 대 용	-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 (서 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08-080호 (사건번호 : 2021조일0030)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엘지유플러스 (시업자등록번호: 220-81-39938, 법인등록번호: 110111-129667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3가)

대표자 하현회

의결연월일 2021. 5. 12.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설립일자	엄종 및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자본금
하현회	1996.07.11.	전기 통신업 유선통신업, 통신판매 및 중개 등	10,649명	25,739억원

2.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09.14.~'21.03.22.)를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피심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치정보 이용약관 (이하 '이용약관')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상 보유기간 경과 시, 자동 파기되도록 위치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약관		위치정보시스템		
수집 항목	보유기간	보유 항목	파기	
개인위치정보	6개월	주소	6개월 경과 시 10분 마다 파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지료 (이하'제공사실 확인자료')	12개월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등	11개월 경과 시 매월 파기	

피심인은 '20.10.29. 기준 이용약관상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위치정보 4일분을 보유했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해야 한다.

나. 판단

'20.10.29. 기준 이용약관상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위치정보 4일분을 파기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3.2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했으며, 피심인은 '21.4.6. 의견을 제출했다.

피심인은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발생 사실이 없고 자진 시정 완료했음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5. 처분 및 결정 : 과태료의 부과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제7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개별기준의 각 목별 위반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마태료 금 2회 위반	액 3회 아 상 위 반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밉 세/5소 제2하제4ㅎ	600	1,200	2,400

2)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가중 사유가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과태료의 감경

아래와 같은 감경 사유가 있으므로 합산하여 기준금액의 40%인 240만원을 감경한다.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위반 정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 인정됨	10% 감경
		10% 감경
자진 시정 등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것이 인정됨	10% 감경
개인정보보호 노력 정도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음	10% 감경

4) 최종 과태료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240만원을 감경한 360만원을 부과한다.

의 교육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제75조 (과태료)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5월 12일

위원장 윤종인 (서명)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성학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서종식 (서명)

위 원 염흥열 (서명)

위 원 이희정 (서명)

위 원 지성우 (서명)